

1. 개정이유

출원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도면 등의 첨부서류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보다 낮은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무효심판 등이 청구되어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건의 정정청구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대한 출원료 차액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료 등의 감면기간을 6년차까지에서 9년차까지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디자인등록출원료의 감면(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신설)

출원서 및 심사등록출원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였으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보다 낮은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서 작성의 편의를 높임.

나. 동일한 권리에 대한 중복 정정청구 시 정정청구료의 인하(안 제2조제3항제5호다목 및 제3조제3항제5호다목 신설)

하나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2건 이상 청구되어 권리자가 각각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마다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 각 정정청구마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특허권자와 실용신안권자의 부담을 줄임.

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대한 출원료 차액 감면
(안 제7조제1항)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 출원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감면체계의 합리성을 높임.

라. 개인, 중소기업 등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감면기간 확대(안 제7조제2항제9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감면하던 것을 9년분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권리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함.

마.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

등록료의 감면(안 제7조제3항)

「발명진흥법」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

바. 수수료 사후 감면의 일괄 신청 허용(안 별지 제3호서식)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등록·심판별로 각각 별도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16.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가목 본문 중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를 “3만원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를 “4만원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가목 본문 중 “3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를 “3만원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4만원에 실용신안등

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를 “4만원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9만9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출원료”를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6년분”을 “9년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제8조제10항제3호 중 “3배”를 “2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총금액 등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 가. 특허료 · 등록료
 - 나.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그 밖의 수수료
 - 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 · 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 - 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원' 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료)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 · 등록 · 심판 번호	-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세	원
지방교육세	원
인지세	원
총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납부자 성명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면제/감면사유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증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 · 등록 · 심판 번호	-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세	원
지방교육세	원
인지세	원
총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증인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앞쪽)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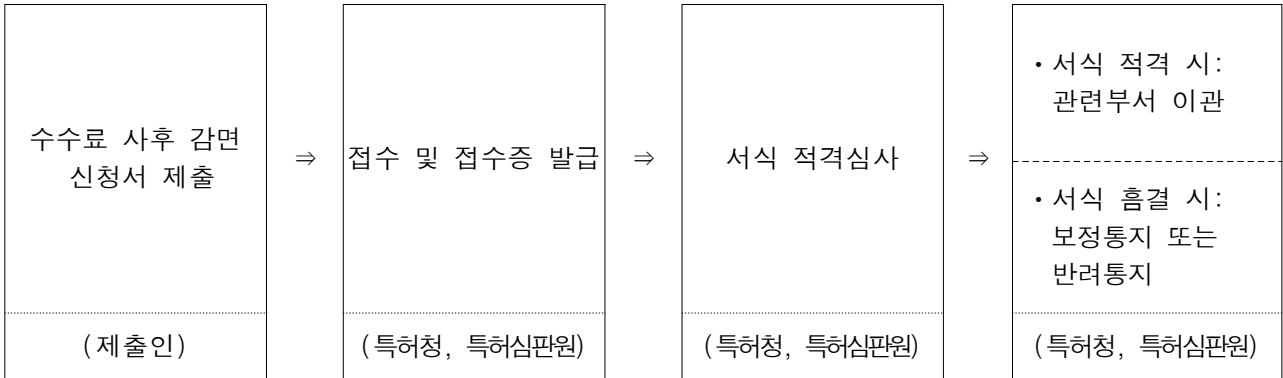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 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만 해당합니다) 등을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안에 표시(예:)합니다.
- 다. 심판청구료(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의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절차인 출원(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변경신고료), 등록(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이전등록료), 심판(심판청구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감면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출원·등록·심판 각각의 절차마다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 예
출원에 관한 신청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9-1234567
등록에 관한 신청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3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9-당-123456

5.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공동출원인이 평균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 또는 면제 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 【은행 및 계좌번호】 00은행 676-01-123456

라. 신탁, 단위농협, 상호저축은행,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3) 반환신청 계좌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신 설>

가. -----
----- 3만원
에 -----

나. -----
----- 4만원
에 -----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6. ~ 12.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원
<단서 신설>

나. ~ 라. (생략)
2. ~ 13. (생략)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

--.

1. -----
가. -----
-----.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2만5천 원으로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 3만원

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신 설>

에 -----

- 나. -----
----- 4만원
에 -----

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6. ~ 12. (생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등록출원료

가.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9만4천원 <단서 신설>

나. (생략)

다.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5천원 <단서 신설>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

--.

1. -----

가. -----

----- .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9만9천원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

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1.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10. (생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

---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

----- 9년분

10.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⑧ (생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생략)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 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
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 ⑱ (생 략)

-----.

-----.

1.·2. (현행과 같음)

3. -----

----- 2배-----

⑪ ~ ⑱ (현행과 같음)